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1. 27
북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11.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11.22.

다. 상정일자 :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12.11.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이 의 택 청소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국민 권익위원회 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순화하고 잘못된 띄어쓰기와 비표준어를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방자치법」 기금 관련 인용 조문 이동(제133조 → 제142조)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신설 제2조의2)
- 3) 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의 연임 규정 및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마련(변경 제5조의2 제5항, 신설 제5조의2 제6항, 신설 같은 조 제7항)
- 4)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순화하고 잘못된 띄어쓰기와 비표준어를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및 제척·기피·해촉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을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